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발사허가권 부여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0027호)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41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발사허가권 부여 등(안 제11조 등)	3

I. 제출경위

[정부 제출]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출연월일 : 2025. 4. 22.

다. 회부연월일 : 2025. 4. 23.

[황희의원안]

가. 발 의 자 : 황희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5. 2.

다. 회부연월일 : 2025. 5.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제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
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
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
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
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의원안]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영역과 민간 기업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 위성 소요를 고려할 때 발사허가제도의 권한을 국방부장관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외에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 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우주 국방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Ⅲ. 검토의견

1. 동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발사허가권 부여 등(안 제11조 등)

가. 주요 내용

- 정부안은 ①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동일한 발사장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일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11조제2항), ②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도 우주발사체의 허가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1조제1항),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안 제11조제7항) 하려는 것임.
- 황희의원안은 ①동일 발사체를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발사하는 발사 운영자에 대하여 발사면허를 발급하는 등 발사면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제27조), ②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도 우주발사체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1조제6항 본문),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발사 시기 등을 우주항공청장에게 통보하도록(안 제11조제6항 단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우주항공청장</u>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 ----- ----- <u>우주항공청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② <u>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다.</u>
② ~ ⑤ (생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설>	⑦ <u>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황희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생략)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7.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에 관한 사항</u>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u>7의2.</u> (생략)	<u>8의2.</u> (현행 제7의2호와 같음)
<u>7의3.</u> (생략)	<u>8의3.</u> (현행 제7의3호와 같음)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 ⑤ (생략)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을 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 우주항공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우주항공청장에게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 관련하여 발사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11조의2(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 ① 우주항공청은 효율적인 발사허가를</u>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u>발사허가</u>를 받을 수 없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위하여 동일 발사체,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발사 운영자에 대하여 발사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발사면허의 기간, 발급 절차, 검토사항, 변경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조(결격사유) ----- ----- 제11조 및 제11조의2 ----- 발사허가 또는 면허 -----.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발사면허의 취소 및 청문) ① <u>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면허를 취득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발사면허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우주발사체 또는 우주발사장 또는 발사안전관리 시스템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④ · ⑤ (생략) 제27조(벌칙) ①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 ----- -----.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2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받은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발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1조¹⁾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신청자는 발사 예정 최소 180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으로 제출하고, ②우주항공청은 신청서류 적합성 및 신청자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접수 후 30일 이내 신청서 접수결과 및 심사계획을 통보하며, ③우주항공청이 이를 심사한 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사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음.

□ 두 개정안은 이러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와 관련하여, ①동일 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소에서 5년 이내에 발사하는 경우 일괄허가를 하거나(정부안) 면허를 발급하여(황희의원안) 절차를 간소

-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우주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화하고, ②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선, 동일한 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경우 일괄허가 또는 면허를 발급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현행 건별허가제도보다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동일한 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경우 해당 발사주체에게 면허를 발급하려는 황희의원안의 경우, 면허의 법적 성격이 특정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와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정부안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는 것이고, 면허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발사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은 허가의 성격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표] 면허와 허가제도 비교·분석

구 분	면허	허가
법적성격	특정자격/권리부여(형성적행위)	일반적 금지의 해제(명령적행위)
규율대상	전문성, 공공안전 밀접 행위/영업	공익을 위해 제한된 행위/영업
기본권 관련	새로운 권리 설정 및 능력 부여	제한된 자유권의 회복

구 분	면허	허가
재량여부	재량행위(공익성 고려)	기속행위
제도목적	특정 분야의 전문성, 공공의 안전 확보	사회 질서 유지 및 일반 공중의 안전보호
사 례	운전 면허, 변호사·의사 면허, 주류제조면허 등	건축허가, 영업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자료: 우주항공청.

□ 다음으로,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에게 발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국방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발사허가권을 갖는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방부장관이 발사허가를 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게 되었을 때 변경허가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36